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041

제출년월일 : 2017.10.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조례 제정을 통해 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안 제6조)
-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안 제7조)
-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안 제8조)
- 내부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안 제9조)

○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위원회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2조, 제13조)
- 위원회 구성 및 임기(안 제14조, 제15조)
- 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위촉(안 제16조, 제17조)

○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등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안 제18조, 제19조)
- 환경조성사업 선정 및 대상사업 보조금 지급(안 제20조, 제21조)

☐ 제정조례안 : 붙임1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2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감사관 하재권 2017-09-29 14:19

□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7. 8. 23. ~ 2017. 9. 12.(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방침결정문 : 붙임3

감사관 하재권 2017-09-29 14:19

〈 붙임 1 〉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
6.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7. "공익신고 보조금"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

감사관 하재권 2017-09-29 14:19

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시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5조(민간협력)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제2장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제6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감사관 하재권 2017-09-29 14:19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이를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그 관할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거나 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는 그 공익신고 처리 결과로 인하여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시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을 증진한 자를 포상금 지

감사관 하재권 2017-09-29 14:19

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표창의 수여)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장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제12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안산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감사관 하재권 2017-09-29 14:19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의원직 임기로 하고,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 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그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을 5년간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과 지침을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위원의 위촉해제·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의 위촉해제,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등

제18조(우수기업 선정)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

감사관 하재권 2017-09-29 14:19

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 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6.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우수기업 대상 지원 등) ①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우수기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기타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시장은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시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분야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환경조성사업 대상 공익신고 보조금 지급)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은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

감사관 하재권 2017-09-29 14:19

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감 사 관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감 사 관 김 성 남
	담당·팀장 직위·성명	청렴팀장 최 미 라
	담 당 자 성명·전화	하 재 권 (행정 2814)

감사관 하재권 2017-09-29 14:19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3051

제안년월일 : 2017. 10. 26.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수정이유

○ 알기쉬운 법령에 의거 조문을 수정하였고 위원회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 주요골자

○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을 "공익신고책임관 등 공무원 및 안산시의회 의원"으로 수정(안 제14조)

○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를 "한차례만"으로 수정 .(안 제15조)

○ 안 제16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7-10-31 15:09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4조 중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을 “ 공익신고책임관 등 공무원 및 안산시의회 의원” 으로 하고 “위원장” 을 “시장” 으로 한다.

안 제15조 중 “1회에 한하여” 를 “ 한차례만” 으로 한다.

안 제16조제5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를 “ 위원에” 으로 하고 “등 관련 규정과 지침을 준용하여” 를 “에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안 제16조제8항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2년 10월31까지로 한다.

안 제20조제1항 중 “주민” 을 “안산시민” 으로 한다.

안 제22조항 중 “시행령 제29조” 를 “법시행령 제29조” 로 한다.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7-10-31 15:09

신·구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14조(구성) ①(생략) ②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14조(구성) ①(원안과 같음) ② --- 공익신고책임관 등 공무원 및 안산시의회 의원,---------- ---------- 시장---------- ---------- ---------- ----------.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생략)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 한차례만 ---------- --. ② (원안과 같음) ③ (원안과 같음)
제16조(위원회 운영) ①~④ (생략)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과 지침을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⑦ (생략) (신설)	제16조(위원회 운영) ①~④ (원안과 같음) ⑤----------위원에 --------- ---------- ---------- 에 따라 ---------- ----------. ⑥~⑦ (생략) ⑧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2년 10월 31까지로 한다.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7-10-31 15:09

제정안	수정안
제20조(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시장은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시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20조(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안산시민 ----------.
제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은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시행령 제29조----------.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7-10-31 15:09